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5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추미애·송옥주·전재수

부승찬 • 전종덕 • 신영대

박희승 • 박선원 • 오세희

한정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본회의,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 관이 보유한 사진·영상물(이하 "서류등"이라 함)의 제출을 정부, 행정 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러한 현행법은 정부나 행정기관의 서류등 제출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은 해당 서류등에 대한 제출 요구권에 그치는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가 서류등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본회의,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,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 있는 안건 심의 등 국회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28조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또는 제6항"으로 한다.

⑥ 본회의,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,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8조(보고·서류 등의 제출 요	제128조(보고·서류 등의 제출 요		
구) ① ~ ⑤ (생 략)	구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⑥ 본회의, 위원회 또는 소위원		
	회는 제1항의 요구를 하는 경		
	우에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		
	으로 하여금 현장조사, 서류등		
	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하게		
	<u>할 수 있다.</u>		
<u>⑥</u> <u>제1항</u> 의 보고 또는 서류등	<u>⑦</u> 제1항 또는 제6항의 보고		
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	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		
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	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		
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		
	른다.		